

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497-14

KOICA

지구촌 행복시대, KOICA와 함께합니다.

제18호 | 2014.11월

개발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 IATI와 원조투명성지수를 중심으로

1. 개요
2. 투명성과 IATI
3. 원조투명성지수
(Aid Transparency
Index; ATI)
4. 우리나라 평가결과
5. 원조투명성 논의와 IATI,
ATI의 한계
6. 결론 및 제언

원조투명성과 책무성은 2008년 아크라에서 개최된 OECD/DAC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제3차 고위급회담(HLF-3)에서 본격적으로 국제원조규범으로 대두되어 2011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원조투명성은 책무성의 도구 또는 입증수단으로서 원조 수행기관이 원조자금을 지급하는 공여국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업무수행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공여국과 수원국들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원조수행기관의 사업추진현황과 자료에 접근 가능토록 하여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책무성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조 수행과정에서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원조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9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가 발족하였고, 2014년 현재 200여개가 넘는 기관들이 IATI의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는 원조기관의 합의체로서 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영국 기반의 국제NGO인 PublishWhatYouFund (PWYF)에서는 각 공여기관별 원조정책과 정보공개 수준을 평가하고 순위를 산정하여 직·간접적으로 공여기관별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조투명성지수(ATI)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5년 IATI가입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한편, KOICA는 우리나라의 대표원조기관으로서 2010년 이후 계속 ATI 평가대상으로 분류되어 투명성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IATI와 PWYF 모두 투명성증진을 위해서는 초반에 많은 자원투자가 필요하며, 행정비용이 상승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규범들이 그러하듯 투명성의 극대화 자체가 바람직한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KOICA는 IATI와 PWYF의 기준을 명확히 검토하고 국내법규와의 상충관계를 파악하여 단계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역효과를 최소화 하여야겠다. 또한, 정보공개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투명성관련 기준 이해도 제고 등 내·외부 인력 역량 강화노력 등이 필요하다.

ODA연구팀 박수영, 박예린

1. 개요

1990년대 이후의 개발원조 효과성 강화 논의는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회담(HLF-3) 이후 투명성강화 논의를 포함하게 되었다. 공여국들이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관들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의 예산집행 및 개발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각 공여기관의 공여국 국민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목표로 원조정보의 투명성강화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2008년 HLF-3에서 일부 공여국들과 다자기관들은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라는 자발적인 투명성강화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다.

IATI의 투명성 관련 활동은 이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결의된 개발효과성에 관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목표 중 하나인 투명성(Transparency)의 측정 지표로 포함되었으며, PublishWhatYouFund(PWYF)라는 국제 NGO는 양, 다자 공여기관들이 IATI의 기준에 따라 투명성강화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ATI)라는 지표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IATI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였고, 현재 IATI의 옵저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PWYF의 ATI지표 평가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투명성 관련 논의나 IATI의 활동, ATI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원조투명성 관련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IATI활동과 ATI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투명성 강화노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투명성과 IATI

2.1. 원조와 투명성

원조에서 투명성이란 정보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의미하며 정부의 책무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조 정보가 시의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이고 상호비교가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첫째는 시의성(Timeliness)으로 정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즉각적으로 제공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다. 이는 제공하는 정보가 종합적인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정보 간 상호 연계 하에 제공되는지를 말한다. 세 번째는 접근

성(Accessibility)으로 정보의 공개 방법과 형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교가능성(Comparability)로 다양한 정보가 국제적 공통의 정보공개 기준과 양식을 사용하여 제공되어 상호간 비교가능한지를 의미한다.

원조투명성논의는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된 OECD/DAC 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3)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전의 파리선언의 5원칙에 투명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크라회의의 결과물인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은 투명성 강화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회의결과 일부 회원국들은 IATI 출범에 합의하였다.

[Box 1] 아크라행동계획의 투명성 관련 조항

- ▷ (AAA 22항) ‘내·외부적 개발자원 활용에 있어 더 큰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과를 진전 시키는 강력한 요인’
- ▷ (AAA 24항) ‘투명성과 책무성은 개발성과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이러한 논의는 제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 (HLF-4), 일명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더욱 강화된다. 투명성은 동 회의결과물인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의 4대 원칙 중 하나가 되었다.¹⁾ 또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제 23항은 국제사회가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OECD DAC통계, IATI 정보, 향후지원계획(Foward Spending Survey; FSS)를 포괄하는 공통 정보를 정의하고, 2015년까지 IATI 전면 가입 및 정보 공개에 참여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의 이행을 점검하는 글로벌파트너십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10개 지표 중 4번 ‘개발협력 정보공개’와 7번 ‘상호책임성’ 2개 지표는 원조투명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5번 ‘예측가능성’, 6번 ‘원조의 예산화’, 9번 ‘수원국 시스템 활용’ 지표는 간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1) 4대 원칙은 수원국 주인의식, 결과 중시, 포괄적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책임성이다.

〈표 1〉 글로벌파트너십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10개 지표

지표	지표 설명	목표치(2015년)
1. 수원국의 우선순위 반영	수원국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정도	모든 공여주체가 수원국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2.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	CIVICUS 시민사회 환경 지수 (Enabling environment index) 활용	지속적 향상
3. 민간분야의 역량강화	민관(Public-Private)간 협의 정도	지속적 향상
4. 개발협력 정보 공개	공동의 공개 표준 활용 정도	모든 공여주체가 활용
5. 예측 가능성	개발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a) 단기 예측성	해당 재정년도에서 계획된 원조 집행 비율	집행되지 않은 비율 50% 감소
(b) 중기 예측성	중기 집행계획에 포함된 원조 비율	포함되지 않은 50% 감소
6. 원조의 예산화	개도국 의회 승인을 받은 연례 예산에서 원조 비율(2010년 기준)	정부에 지원되는 개발원조중 정부 예산에 보고되지 않은 비율 50% 감소
7. 상호 책임성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상호평가 검토 참여	모든 개도국에서 도입
8.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배정과 이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비율(%)	모든 개도국에서 도입
9. 수원국 시스템 활용		
(a) 개도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PMF)의 질적 수준	효과적인 제도 구축을 위한 개도국 시스템 강화 및 활용(2010년 기준)	개도국 50% 이상에서 PFM/CPIA 점수 최소 1단계 상승
(b) 수원국 PMF 및 조달시스템 활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 감축
10. 비구속화	비구속성 원조 비율(%) (2010년 기준)	지속적 향상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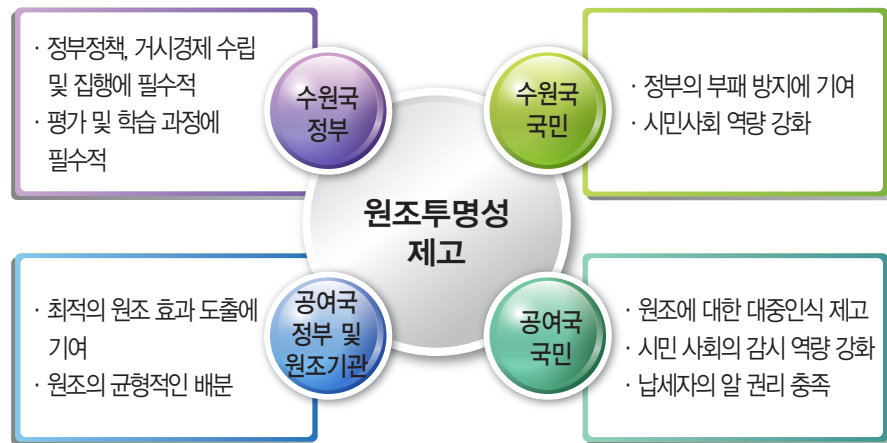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Post-2015 프레임워크 관련 논의에서도 책무성과 투명성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2013년 5월 발간된 UN 고위급패널보고서(UN High Level Panel Report)에서 언급된 '새로운 정보혁명(New Data Revolution)'은 원조투명성과 연결되는 사항이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향상을 UN의 절대빈곤 퇴치 달성 노력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원조에서 투명성이슈가 대두된 것은 공여국들의 연구와 노력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2000년대 이후 일부 유럽 공여국들은 예산지원(Budget Support)형태의 원조를 증대해왔다.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유럽 공여국들 중심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원조사업을 수원국 정부를 통해 집행하는 방식을 늘려왔다. 이렇게 수원국을 통한 원조가 늘면서 공여국들은 자신들의 원조가 정확하게 계획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원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투명성 강화, 특히 예산집행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예산투명성(Budget Transparency)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Moon and Williamson, 2010). 즉, 공여국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원조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책무성이 공여국 정부에서 수원국 정부로 이어지게 되었고, 자국 시민단체 등에 대해 원조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여국 정부들은 수원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편, 공여국 정부들 또한 수원국 정부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와의 비교분석 및 각 공여기관별 정보공개를 통해 수원국이 받는 정확한 원조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공개하는 정보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증가되었다. 우간다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우간다에서 실제 집행된 원조액은 지원되었다고 파악된 금액의 두 배였다 (ODI, 2007). 즉, 공여국들이 각 수원국 별로 실제 전달된 원조액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을 통한 비효율성을 지양하고자 하는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다.

공여국들의 원조투명성 강화 이유는 적절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예산집행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고, 이를 통해 원조집행의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수원국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강화를 통해 수원국의 예산집행 시스템을 보다 쉽게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림 1] 원조투명성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기대효과



※ 출처 : KOICA, 2014a

2.2. IATI와 투명성기준

IATI는 국제사회의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조관련 정보 공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발적 협의체 형태의 기구로서, 2008년 9월 아크라 세계개발원조총회(HLF-3)시 자발적인 다자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Multi-Stakeholder Initiative)로 출범하였다. IATI의 목표는 전 세계 공여기관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이며 IATI는 이를 위하여 각 공여기관의 정보 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ATI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라고 번역되나 정확히 전통적인 형태의 국제기구 아니다. IATI의 회원가입 자격이 국별 정부 뿐 아니라 비정부기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IATI는 공여국, 수원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 등 IATI의 목적과 공약에 동의하는 다양한 기관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2014년 IATI 연보를 기준으로 59개 정회원이 있으며, 이 중 29개 회원이 정보공개에 참여 중이다. 한편, IATI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기관의 수는 총 210여개이다.

2015년부터 적용될 IATI의 정보공개기준은 총 39개이며, 이중 7개는 기관평가기준, 32개는 사업평가기준이다.²⁾ IATI는 회원들이 합의와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IATI의 지표를 준수하고 이행하

2) IATI의 전체지표는 첨부 1. IATI 201 참조.

는지 보고하며, 사무국이 별도로 평가를 통해 이행사항을 강제하지 않는다. 단, 원조투명성이 개발원조 수행의 국제적인 규범이 되면서,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등의 원조관련 평가에서 IATI 가입여부나 IATI의 규범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첨부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IATI의 공개대상 정보는 대부분 예산 투명성과 관련된다. 보고기관의 계획문서에 대한 공개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별 총예산, 연간집행예산, 집행채널 등 지원되는 원조예산 규모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조투명성이라는 원칙이 각 수 원국별로 집결되는 원조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중복을 지양하고 원조 집행과정에서의 부패 소지를 줄이려는 의도에 부합한다 하겠다.

IATI의 정보공개 기준은 회원들의 합의를 통해 개정되는데 IATI는 2014년 10월 16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IATI 2.01을 소개하고 2015년부터 동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를 결의하였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 정리된 정보공개 기준은 IATI 2.01의 기준이다.

3. 원조투명성지수 (Aid Transparency Index; ATI)

3.1. PWYF와 ATI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ATI)는 그 이름으로 인해 IATI와 혼동되는 투명성 평가 지표이다. ATI는 그러나 실제로는 IATI와는 관련이 없으며, 영국소재 NGO인 PublishWhatYouFund (PWYF)에서 총괄 실시한다. 다만, ATI의 지표들은 대부분 IATI의 정보공개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로 평가된다. PWYF는 IATI 발족 이후, IATI가 각 회원국들에 대해 투명성 이행의무를 부과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 공여국, 기관별 원조투명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겨 공여기관들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고자 ATI를 기획하였다.

2011년도 시범평가를 거쳐 제1차 평가는 2012년에 시작되었다. 2012년도 평가에서는 KOICA와 EDCF모두 평가를 받았으나, 2013년도 이후로는 KOICA만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평가로서 아직 방법론이나 기준 등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 매년 약간씩 평가방법이 수정되었다.

PWYF는 매년 1회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공여기관들에 대해 ATI평가를 실시한다. 단, 데이터 수집과 1차 평가는 PWYF가 직접 실시하지 않으며, 각 공여기관을 평가할 대표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동 시민단체를 통해 수행한다. PWYF는 각 시민단체를 통해 실시된 1차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결과를 확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DA Watch에서 1차 평가를 수행한다.

PWYF의 평가는 매년 4월에 시작된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7월 중 평가결과에 대한 공여기관과 국별 1차 평가 수행 기관의 최종 의견을 수집하고 10월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표 2〉 ATI평가 일정 (2014년 평가 기준)

일정	추진 사항
4월	PWYF 정보 관련 자료 수집 시작
5월	중간평가결과 공개 및 공여기관 공유 평가결과에 대한 공여기관 1차 의견 수렴
6월	평가결과에 대한 국내 평가수행기관의 1차 의견 수렴 PWYF의 자료 수집 종료
7월	평가 결과에 대한 공여기관 및 평가수행기관 2차 의견 수렴
10월	ATI 평가 결과 발표

※ 출처 : 저자 작성(ati.publishwhatyoufund.org의 자료 재구성)

2014년 평가에서 ATI는 68개 공여기관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2013년에도 평가대상 67개 기관에 크로아티아 외교 및 EU부를 포함한 것이다.³⁾ ATI평가 대상 기관은 아래와 같은 3개의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공여기관이다.

[Box 2] ATI평가 대상 공여기관 선정 기준

1. 대규모 공여기관이어야 한다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지출)
2. 주요 원조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및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부산의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정부 혹은 국제기구 차원, 가령 G7이나 EU 회원국, 등의 투명성 책무가 적용되는 원조기관이어야 한다.

3) 크로아티아는 2013년에 EU에 가입하였으며, 원조투명성과 관련하여 EU차원의 책무로 평가받는다.

※ 출처 : ati.publishwhatyoufund.org

ATI 지수는 어떤 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전반적인 책무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원조사업에 대해 해당 기관이 기관 차원에서 정보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평가한다. 2013년 ATI는 지수 산정 방법론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 이후 개발환경의 변화와, 책무와 정보공개 두 가지 모두의 차원에서의 공여기관들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한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일한 방법론이 2014년에도 활용이 되었다. 이제 평가에 사용된 지수, 그리고 점수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ATI 평가 방법

3.2.1. ATI 평가 지표와 점수산정법

ATI는 39개의 지표를 사용한다. 39개 지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원조투명성에 대한 공약 차원을 측정하는 3개 지표이며, 다른 하나는 원조정보 공개 정도를 측정하는 36개 지표이다. 원조투명성에 대한 공약차원 지표는 전체 가중치 중 10%를 차지하는 반면, 정보공개 지표는 90%를 차지한다. 정보공개 지표들은 기관 차원의 8개 지표와 개별 원조사업(Activity) 차원 28개로 분류된다. 즉, 최종적으로 원조투명성에 대한 공약 차원 10%, 기관차원 25%, 사업차원 지표 카테고리에 65%로 각각 차등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표 3〉 2014년 기준 ATI평가지표와 가중치

분류	지표	평가기준	가중치
원조투명성에 대한 공약 (Commitment to aid transparency)	1. Quality of FOI legislation (정보공개 관련 정책 및 제도)	정보권리 순위 에 기반	3.33%
	2. Implementation schedules (투명성(ATI) 이행계획)	ATI 이행계획 수립여부	3.33%
	3. Accessibility (ODA 정보 접근성)		3.33%
원조정보공개-기관 수준 (Publication-Organization level)	4. Strategy (전략)	접근성	2.50%
	5. Annual report(연례보고서)	접근성	2.50%
	6. Allocation policy (원조배분 정책)	접근성	2.50%
	7. Procurement policy (조달 정책)	접근성	2.50%
	8. Strategy (country) (국가지원전략)	접근성	2.50%
	9. Total organization budget (총 예산)	정보양식 및 제공연수	4.17%

개발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 IATI와 원조투명성지수를 중심으로

분류	지표	평가기준	가중치
원조정보공개-기관 수준 (Publication-Organization level)	10. Disaggregated budget (국별, 분야별 지출 예산)	정보양식 및 제공연수	4.17%
	11. Audit(연간 감사 결과)	접근성	4.17%
	12. Implementer (수행기관 정보)	정보양식	1.63%
	13. Unique ID (사업 고유 식별 정보)	정보양식	1.63%
	14. Title (사업명)	정보양식	1.63%
	15. Description (사업설명)	정보양식	1.63%
	16. Planned dates (사업 계획 일정)	정보양식	1.63%
	17. Actual dates (사업 실제 일정)	정보양식	1.63%
	18. Current status (진행 현황)	정보양식	1.63%
	19. Contact details (사업 담당자 정보)	정보양식	1.63%
원조정보공개-사업 수준 (Publication-Activity level)	20. Collaboration type (원조사업 유형)	정보양식	1.86%
	21. Flow type (예산 지원 유형)	정보양식	1.86%
	22. Aid type (원조 사업 유형)	정보양식	1.86%
	23. Finance type (원조자원 성격)	정보양식	1.86%
	24. Sectors (분야)	정보양식	1.86%
	25. Sub-national location (사업 수행 지역)	정보양식	1.86%
	26. Tied aid status (비구속화 여부)	정보양식	1.86%
	2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가 간 협정 및 약정문서)	접근성	2.17%
	28. Evaluations (평가보고서)	접근성	2.17%
	29. Objectives (사업 목적/목표)	접근성	2.17%
	30. Budget docs (사업 예산 문서)	접근성	2.17%
	31. Contracts (사업수행자 계약문서)	접근성	2.17%
	32. Tenders (사업 입찰 문서)	접근성	2.17%
	33. Overall cost (사업 총 비용)	정보양식	3.25%
	34. Planned expenditures (약정 예산 및 집행 계획)	정보양식	3.25%
	35. Actual expenditures (실제 집행 예산)	정보양식	3.25%
	36. Budget ID (사업예산 식별 기호)	정보양식	3.25%
	37. Results (사업결과)	정보양식	4.33%
	38. Impact appraisals (사전 영향 평가)	접근성	4.33%
	39. Conditions (Terms and condition 문서)	접근성	4.33%

※ 출처 : KOICA, 2013

원조투명성에 대한 공약차원은 정보공개 관련 정책 및 제도, IATI 이행계획과 ODA 정보 접근성으로 거시적 지표 3개로 평가한다. 첫 번째 지표인 정보공개 관련 정책 및 제도는 비영리기관인 정보접근 유럽(Access Info Europe)과 법과 민주주의 센터(Centre for Law and Democracy)에서 제공하는 정보권리 순위(Right to Information Rating)에 기반하여 산출된다. 두 번째 지표는 IATI 이행계획으로 IATI 가입 및 향후 ATI 이행계획 여부로 평가된다. 세 번째 지표는 ODA 정보 접근성이다. 동 지표는 데이터 자유 추출허용(Free bulk export of data), 원조사업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제공, 오픈라이선스(Open license)⁴⁾ 허용의 3가지 기준으로 평가된다.

기관 차원 및 사업 차원 지표는 정보공개양식(format) 및 접근성(accessibility)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4년 평가에서는 시의적이고 완전한 정보공개 여부에만 점수를 부과한 2012년의 엄격한 기준에서 정보 접근성과 정보의 질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어 평가가 수행되었다.

사업 차원에 소속된 22개 지표는 해당 정보공개 여부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양식(publication format)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된다. 이는 정보 수요자가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비교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해독가능(machine-readable) 양식을 제공해야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IATI XML 양식 파일은 50-100%, Excel/CSV file은 50%, Website는 33.33%, PDF는 16.67%의 순으로 차등적으로 점수가 부과된다. 나머지 기관차원의 6개 지표와 사업차원의 8개 지표는 정보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에 따라 0-100점의 점수가 부과되며 이 또한 파일 양식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된다.

모든 지표들은 0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된다. 39개 지표별로 산정된 점수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총점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 순위가 정해진다.

3.2.2. 정보수집 절차

평가를 위한 기초 정보 수집은 4월부터 6월 사이 이루어진다. ATI에 포함된 대부분의 정보는 개별 기관이 기관 공식 홈페이지, IATI 등록정보, 미국 해외 원조 게시판, OECD 공통기준에 대한 웹사이트 등에서 수집되었다. 다만, 정보자유의 질에 대한 지수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자료 출처가 활용된다.

4) 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재배포, 이용 등의 허용을 명시적으로 표기

IATI 등록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 질을 평가하는

도구를 통해 검사하였다. 2014년에는 IATI 지수 산정에 고려되기 위하여 반드시 IATI 등록정보를 통해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한다. 다른 출처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들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36개의 정보공개 지수와 정보가 공개되는 포맷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효성(입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든 설문조사는 해당 공여기관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개발재원(공적개발원조(ODA), 기타공적자금(OOF), 그리고 IATI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후기금이나 남남협력에 제공되는 비전통적 개발자금흐름을 포함한 모든 개발재원)을 제공받는 수원국(혹은 공여기관이 원조활동을 지역이나 국가별 보다는 분야별 섹터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섹터)과 연관된 정보를 활용하여 완성되었다. 모든 정보가 개별 사업 차원에서 공개되고 있음을 확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혹은 부문별 분류 내에서 다섯 개 사업이 무작위로 선별되었다.

68개의 평가대상 공여기관 모두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였고, 이는 다시 전문 시민사회단체들과 PWYF가 검토하였다. ATI를 위해 수집된 공여기관의 반응이나 독립적인 검토자들의 검토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플랫폼인 원조투명성 추적 프로그램(Aid Transparency Tracker)에 저장된다.

4. 우리나라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수행된 평가의 평가대상이다. 단, 2012년 1차 평가에서는 KOICA와 EDCF 모두 평가를 받은 반면, 2013년부터는 KOICA만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래 표가 보여주듯이 KOICA의 절대평가 결과는 2013년 27.9%에서 2014년 36.9%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다만, 다른 공여기관들도 모두 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 바, 상대적인 평가순위는 30위에서 34위로 네 계단 하락하였다.

[표 4] 2012년-2014년 우리나라 ATI평가 결과

구분	2011 (시범평가)		2012년		2013년	2014년
기관	KOICA	EDCF	KOICA	EDCF	KOICA	KOICA
순위	22/58	43/58	41/72	37/72	30/67	34/68
점수(%)	37%	20%	39%	42%	27.94%	36.89%

※출처 : 저자 작성 (ati.publishwhatyoufund.org의 자료 재구성)

2013년 대비 2014년의 변동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2013년 대비 KOICA는 총 14개 지수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다. KOICA는 2013년 이후 ATI평가 대비 정보공개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차원과 사업차원에서 국내법과 시스템이 허락하는 한 정보공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 2개 부문에서 점수 개선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원조에 관한 책무의 경우, 평가대상 3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상위법과 관련되어 있는 바, 점수가 하락하였다. 이렇듯, 39개 중 14개의 지수에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순위는 하락하였다. 이는 그만큼 다른 공여기관들이 원조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개선 노력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열린정부파트너십의 회원국이지만, 국가행동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원조투명성 책무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1번 지표인 정보공개 관련 정책 및 제도부문에서 점수를 얻지 못했다. 2014년 3월, 우리 정부가 2015년 중 IATI 가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KOICA가 OECD에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지표 2번에서는 점수를 얻었다. 또한, 3번 정보공개 부분은 KOICA 데이터베이스인 “stat.koica.go.kr”에 대해 평가되었다.

[표 5] 2013-2014년 우리나라 평가결과 비교

부문	2013년	2014년
원조에 대한 책무(10)	4.44/10	3.54/10
기관차원의 정보공개(25)	10.88/25	11.12/25
활동차원의 정보공개(65)	12.62/65	22.24/65
결과 (%)	27.94	36.89

※출처 : 저자 작성 (ati.publishwhatyoufund.org의 자료 재구성)

아래 박스는 개선이 이루어진 14개 지표의 세부내역이다. KOICA는 PWYF의 기준에 따라, 기존 공개 정보의 포맷을 컴퓨터 해독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공개하고, 비공개 정보들을 공개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아래 박스에서와 같은 개선을 이루어내었다.

[Box 3] 2014년 평가 KOICA 개선지표

1. 다른 형태에서 컴퓨터 해독 가능한 형태 보고로의 진전이 있는 경우 (6개)
 - 9. 전체 기관 예산(Organization Budget)
 - 12. 사업수행자(Implementer)
 - 14. 명칭(Title)
 - 18. 현황(Status)
 - 21. 자금흐름형태 (Flow type)
 - 23. 자금유형(Finance Type)
2. 정보공개 형태에 진전이 있는 경우 (5개)
 - 15. 설명(Description): HWP로 공개하여 해독불가능한 상태에서 웹사이트 보고로 전환
 - 25. 국가내 위치(Sub-national location): PDF보고에서 웹사이트 보고로 전환
 - 26. 구속성 원조 현황(Tied Aid Status): PDF보고에서 웹사이트 보고로 전환
 - 37. 결과(Results) : PDF보고에서 웹사이트 보고로 전환
 - 38. 영향평가(Impact Appraisals): 가끔씩 보고(sometimes)에서 상시보고(always)로 전환
3. 보고 안함에서 정보공개로 전환된 경우(모두 컴퓨터 해독가능한 포맷으로 정보 공개, 총 4개)
 - 20. 협력형태 분류(Collaboration Type)
 - 22. 원조 종류(Aid Type)
 - 24. 부문(Sector)
 - 34. 약정액(Commitments)

※출처 : 저자 작성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계획된 일정(Planned Dates)’ 지표의 경우는 2013년에는 PDF로 정보를 공개하다가 2014년에는 오히려 공개를 안 함으로 전환되어 점수가 하락하였다.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ATI평가에서 정보보고 형태가 점수측정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음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평가과정의 확인절차상의 문제는 후술될 ATI평가의 한계가 된다.

한편, ATI평가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는 국내 상위법이나 정부체제상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문서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노하우와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금지된 경우가 많다. 많은 다른 원조기관들도 표준계약서 문안은 공개하지만 실제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0번 국별, 분야별 지출 예산(Disaggregated budget) 지표와 같

이 중, 장기 예산 정보 제공과 관련된 지표는 우리 정부 시스템 상 중기 예산 지출 계획 수립이 어려운 바, 개선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ATI의 기준과 국내법규와의 상충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집행일정을 공개하고 공개된 일정에 따라 실제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KOICA의 올해 점수는 36.89%이며, 하위(poor) 분류에 속한다. 하지만, 68개 공여기관 중 다자원조기관을 제외한 50개의 양자원조 기관 중에서는 20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열악한 시스템과 인력상황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응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투명성을 개선해 온 KOICA의 노력과 역량의 결실이라고 하겠다. PWYF 또한 KOICA는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기획 관련 정보와 원조사업의 분류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프로젝트 문건과 성과 정보(결과, 조건, 영향평가 등) 제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선두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PWYF, 2014).

한편, 개별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와 재정 데이터의 체계적 제공이란 측면에서는 보다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16년까지 완료되면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장기예산 예측의 경우는 우리 정부의 예산회계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정부 기관과의 협의 등 추가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5. 원조투명성 논의와 IATI, ATI의 한계

원조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금집행의 책무성을 증대하고 원조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고취한다는 목적에 반대의 여지가 적어 보인다. 그러나, 각 공여기관별, 국가별 상황이 상이한 상태에서 상세한 계획이나 대비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나 개발공헌지수(CDI)가 보여주듯 대부분의 원조관련 평가나 지표들은 원조를 오랫동안 수행한 서구 공여국가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 개발되어 그들과 다른 역사와 경험, 상황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여국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장에서는 IATI기준과 ATI평가 적용에서 고려할 한계를 분석하겠다.

5.1. 투명성의 위험성에 고려 필요

앞서 반복적으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중요하며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공개와 투명성이 예산집행에서 지켜야 할 유일무이의 원칙은 아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정보공개는 오히려 기관들의 노하우와 같은 지식 재산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계약문서의 비공개는 이러한 계약 대상업체/기관의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각 국가 정부들이 정보의 민감도 등에 따라 공개기준과 시한을 정하는 것처럼 정보공개는 시점과 시기가 중요하다. 물론 현재 IATI의 기준자체가 참여기관들의 컨센서스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정보공개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검증 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PWYF는 특히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 하에 EDCF를 포함한 일부 개발금융기관을 평가에서 제외한 것이다.⁵⁾ 따라서, 향후 정보공개 수준과 방식, 시기에 있어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다.

5.2. 행정비용 상승으로 인한 다른 원조평가와의 단기적 상충성

IATI는 정보공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IATI기준을 채택, 이행하는데 필요한 공여국 별 소요 비용을 50만 불에서 백만 불로 예측했다 (IATI, 2009). 그러나, QuODA의 31개 지표 중 효율성 중대분야 3번 지표는 공여국의 행정비용 저감노력을 평가한다. 즉, 원조예산에서 행정비용이 낮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PWYF의 관계자 역시 IATI기준에 따라 보고방식을 전환하고 ATI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행정비용 상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⁶⁾ 즉, 서로 다른 원조관련 평가들 기준이 서로 충돌되면서 피평가기관의 정책수립과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5.3. 포맷종류별 점수 산정의 비논리성

IATI와 ATI 모두 원조활동 관련 정보를 PDF가 아닌 컴퓨터 해독가능포맷으로 공개하여야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웹상에서는 PDF를 워드나 다른 해독가능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한편, 기관들이 PDF로 문서를 공개하는 사유에는 공개된 정보의 왜곡된 변형을 막으려는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변환이 가능한 포

5) 2014.11.4 면담

6) 2014.11.4 면담

맷으로의 정보공개의 이면에는 공개된 정보가 원치 않게 변형, 가공될 위험을 동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PDF로 공개하는 경우 점수를 낮게 부과하는 등 단순히 파일 포맷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평가 편의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5.4. 정보수집 및 평가과정의 취약성

PWYF의 ATI 평가는 각 국별 자료해석 및 1차 평가를 서로 다른 NGO들이 수행하며, 그 결과를 PWYF 본부가 다시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각 국별 평가수행 기관들의 역량과 기준의 해석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수행자의 자의적으로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PWYF역시 대규모 예산과 인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며 ATI의 역사 자체도 3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는 않다. 2012년 평가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다시 수정한 사실을 고려하여도 동 평가가 원조의 투명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우리나라 평가결과 중 지표 4, 5번은 PDF로 공개된 정보가 되었음에도 50점을 획득하였고, 이는 평가절차 상에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PWYF와 국별 평가기관들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한편, PWYF측은 면담에서 EDCF가 제외된 이유는 개발금융기관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여 동 기관들이 제외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2014년 평가에서 지역별 개발은행, 독일의 BMZ 등 개발금융을 수행기관들도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PWYF측 자체가 공여기관 선별이유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영국, 프랑스 등의 많은 공여국들이 개발금융기관의 원조를 별도로 통계처리하지 않고 대표 원조기관인 DFID, AFD의 통계에 포함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가대상 원조기관 선정의 정확성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사항은 평가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PWYF는 평가 절차와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5.5. 국별 상이한 상황에 대한 비교

ATI의 평가절차는 4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월에 시작되는 단년도 예산회계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국별로 4월, 9월 등 예산회계시스템의 시작 시기가 모두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30일 마감으로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지 예산회계 시작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높은 또는 낮은 점수를 받게되므로 이는 맞지 않다. QuODA, CDI, OECD의 통계 등이 모두 1개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이러한 오류를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PWYF는 평가절차를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공여국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원조사업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책무성을 높여 사업효과성을 높인다는 대전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위 정책의 당위성이 실제 사업 추진이나 집행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검토와 분석에 바탕을 둔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6.1. PWYF의 개선사항

앞서 한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PWYF의 ATI 평가는 신설된 평가로서 아직 논리성이나 체계성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여기관은 국내에서 평가의 옳고 그름을 밝히기 전에 평가결과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PWYF는 자신들의 평가가 초래할 영향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평가절차와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계 연도별 시작시기의 차이로 인한 국별 평가의 불이익을 수정하고, 각 국별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해석의 자의성에 따른 평가오류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6.2. 우리나라의 개선사항

시스템개선과 관련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KOICA의 경우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동결된 과소한 행정비용으로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통계와 시스템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도 매우 과소하다. 따라서, 시스템 개선 및 역량 있는 인력확보를 위해 IATI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 비용을 상세하게 측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및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IATI와 ATI의 기준이행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TI와 ATI의 기준과 평가자체에 한계는 있지만, 우리 정부가 IATI 가입을 천명한 상태에서 이행계획 수립 등의 대비는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KOICA는 IATI와 ATI의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보공개로 인한 위험성 등 비용 등을 면밀히 측정하고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IATI 기준은 우리나라 정부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들은 정보공개를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를 하나의 책무로 규정하여 한국 ODA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저자

연구책임자

박수영

- KOICA ODA 연구팀 팀장(carpediem@koica.go.kr)
-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정책학 박사

공동연구원

박예린

- KOICA ODA 연구팀 연구원(yrpark@koica.go.kr)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Annex 1.

IATI정보공개기준 2.01

대분류	대분류 (영문)	대분류 (국문)	소분류 (영문)	소분류 (국문)	항목설명	KOICA1차 보고대상
기관차원 (Organization Standard)	Organization Identifier	기관 식별자			기계 해독이 가능한 보고기관 식별체계	O (CRS++ 중복)
	Organization Name	기관명	Narrative	서술 항목	해독가능한 기관의 명칭	O (CRS++ 중복)
	Reporting Organization	보고 기관	Narrative	서술 항목	원조정보를 공개하는 기관명과 기관식별자	O (CRS++ 중복)
	Total Budget	전체 예산	Period Start	기간 착수일	해당기관의 향후 3년 간 계획된 예산 보고 (권고사항)	
			Period End	기간 종료일		
			Value	금액 (가치)		
			Budget Line	예산선		
			Value	금액 (가치)		
			Narrative	서술 항목		
	Recipient Organization Budget	수원기관 예산	Recipient Organization	수원기관명	보고기관으로부터 core funding을 제공 받는 수원기관으로, 향후 3년 간 계획된 예산 보고(권고사항)	
			Narrative	서술 항목		
			Period Start	시작일		
			Period End	종료일		
			Value	금액 (가치)		
			Budget Line	예산선		
			Value	금액 (가치)		
			Narrative	서술 항목		
	Recipient Country Budget	수원국 예산	Recipient Country	수원국 예산	보고기관이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의 미래 예산계획으로, 향후 3년의 계획된 예산을 보고(권고사항)	
			Period Start	시작일		
			Period End	종료일		
			Value	금액 (가치)		
			Budget Line	예산선		
			Value	금액 (가치)		
			Narrative	서술 항목		
	Document Link	문서링크	Title	제목	대중에 공개된 홈페이지나 문건에 대한 접근성(링크 등)	
			Narrative	서술 항목		
			Category	분류		
			Language	언어		
			Recipient Country	수원국		
			Narrative	서술 항목		

개발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 IATI와 원조투명성지수를 중심으로

대분류	대분류 (영문)	대분류 (국문)	소분류 (영문)	소분류 (국문)	항목설명	KOICA1차 보고대상
사업차원 (Activity Standard)	IATI Identifier	IATI 식별자			전 세계적으로 통용가능한 특정 활동에 대한 식별자	
	Reporting Organization	보고기관	Narrative	서술 항목	원조 보고를 공개하는 기관명	
	Title	사업명	Narrative	서술 항목	다양한 언어로 제공 권고	O (CRS++ 중복)
	Description	사업 설명	Narrative	서술 항목	사업명보다는 길며, 해독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며, 다양한 언어로 제공 권고	O (CRS++ 중복)
	Participating Organization	참여 기관	Narrative	서술 항목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자금 제공자, 공여국 혹은 기관 모두 가능	O (CRS++ 중복)
	Other Identifier	기타 식별자	Owner Organization Narrative	소유기관 서술 항목	보고기관 고유의 식별자 정보 제공 가능	
	Activity Status	사업 진행 상황			현재 사업의 진행 상황	O (CRS++ 중복)
	Activity Date	사업날짜	Narrative	서술 항목	계획된 일정과 실제일정(착수일과 종료일) 모두포함함. 착수일은 편당, 기획 혹은 실제 사업의 시작일중 어떤것도 가능함. 종료일은 물리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시점을 반영해야함.	O (CRS++ 중복)
	Contact Information	연락 정보	Organization	기관명	사업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정보. 소속 기관, 부서, 직급,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홈페이지 등	
			Narrative	서술 항목		
			Department	부서명		
			Narrative	서술 항목		
			Person Name	담당자명		
			Narrative	서술 항목		
			Job Title	직위		
			Telephone	전화번호		
			Email	이메일주소		
			Mailing Address	주소		
			Website	웹사이트		
			Narrative	서술 항목		

개발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 IATI와 원조투명성지수를 중심으로

대분류	대분류 (영문)	대분류 (국문)	소분류 (영문)	소분류 (국문)	항목설명	KOICA1차 보고대상
사업차원 (Activity Standard)	Activity Scope	사업 범위			사업이 진행된(되는) 지리적 범위, 예를 들어, 지역, 국가, 국가 내 행정구역 등 지역적 정보를 반영	
	Recipient Country	수원국	Narrative	서술 항목	해당 사업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국가. 만일 이 정보가 알려져있지 않다면 다음 '수원지역' 정보를 통해 반드시 보고, 만일 하나 이상의 국가나 기관이 기여하고 있다면, 다수의 수원국 혹은 수원지역 정보 제공 가능	O (CRS++ 중복)
	Recipient Region	수원지역	Narrative	서술 항목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국가 단위를 넘어선 지정학적 지역, 상기 동일	O (CRS++ 중복)
	Location	위치정보	Location Reach	(사업과 목표그룹의) 위치 범위	사업 대상지역을 지리학적으로 하위지역 단위로 나타낸 정보	
			Location ID	지역 ID		
			Name	지역명		
			Narrative	서술 항목		
			Description	지역 설명		
			Narrative	서술 항목		
			Activity Description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 설명		
			Narrative	서술 항목		
			Administrative	행정구역상 하위지역		
			Point	GML 3.3 포인트로 나타낸 위치 정보		
			Pos	위도 및 경도		
			Exactness	(사업에 부합하는) 위치적 정보의 제공여부		
			Location Class	위치 분류		
			Feature Designation			

개발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 IATI와 원조투명성지수를 중심으로

대분류	대분류 (영문)	대분류 (국문)	소분류 (영문)	소분류 (국문)	항목설명	KOICA1차 보고대상
사업차원 (Activity Standard)	Sector	부문	Narrative	서술 항목	인식가능한 코드나 언어로 나타낸 사업의 목표를 의미함. 부문정보는 반드시 동기준이나 거래(transaction)기준 중 한군데에서 보고가 되어야 함.	O (CRS++ 중복)
	Country Budget Items	수원국예산 항목	Budget Item	예산 항목	본 정보는 수원국의 회계계통도에 나오는 기능적이고 행정적인 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정보를 정리한 정보를 의미. 예산내외 활동을 모두 포함 함.	
			Description	설명		
			Narrative	서술 항목		
	Policy Marker	정책 마커	Narrative	서술 항목	해당 사업을 통해 다루어지는 정책이나 테마를 의미	O (CRS++ 중복)
	Collaboration Type	협력 형태			양자, 다자 등 사업 지급처를 포함한 협력 형태	
	Default Flow Type	재원형태 기본값			해당 사업이 ODA, OOF 혹은 기타 형태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정보	
	Default Finance Type	재원종류 기본값			증여, 차관, 부채경감 등. 본정보는 보고된 해당사업의 거래전반에 대한 기본값이며, 개별 거래정보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O (CRS++ 중복)
	Default Aid Type	원조형태 기본값			예산지원, 부채경감 등 제공된 원조형태. 본 정보 역시 보고된 해당사업 거래 전반에 대한 기본값이며, 개별 거래정보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O (CRS++ 중복)
	Default Tied Status	구속성 상태 기본값			비구속, 부분구속, 구속여부를 구분함.	O (CRS++ 중복)
	Budget	예산	Period Start	착수시점	사업기간 내의 분기별 혹은 연도별 원조활동 예산의 값을 의미	O (CRS++ 중복)
			Period End	종료시점		
			Value	금액 (가치)		
	Planned Disbursement	집행 계획	Period Start	착수시점	구체적인 현금지원에 대해서 적용하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측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보고함	
			Period End	종료시점		
			Value	금액 (가치)		
	Capital Spend	자본 지출			총 약정액 중 자본 지출 부분에 대한 비율	

개발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 IATI와 원조투명성지수를 중심으로

대분류	대분류 (영문)	대분류 (국문)	소분류 (영문)	소분류 (국문)	항목설명	KOICA1차 보고대상
사업차원 (Activity Standard)	Transaction	거래	Transaction Type	거래 종류	거래의 종류(type), 제공자(provider), 거래일자(date), 금액(value), 설명(description), 공여기관(provider organization), 수원기관(receiver organization), 집행채널(disbursement channel), 부문(sector), 수원국(recipient country), 수원지역(recipient region), 자원형태(flow type), 자원종류(finance type), 원조형태(aid type), 구속성 상태(tied status) 보고	
			Transaction Date	거래 일시		
			Transaction Value	거래 금액		
			Transaction Description	거래 설명		
			Narrative	서술 항목		
			Provider Organization	제공기관		
			Narrative	서술 항목		
			Receiver Organization	수원기관명		
			Narrative	서술 항목		
			Disbursement Channel	집행채널		
			Sector	부문		
			Narrative	서술 항목		
			Recipient Country	수원국		
			Narrative	서술 항목		
			Recipient Region	수원지역		
			Narrative	서술 항목		
			Flow Type	자원형태		
			Finance Type	자원종류		
			Aid Type	원조형태		
			Tied Status	구속성 상태		
	Document Link	문서링크	Title	제목	대중에 공개된 홈페이지나 문건에 대한 접근성(링크)	
			Narrative	서술 항목		
			Category	분류		
			Language	언어		
	Related Activity	관련 사업			해당 사업과 관련된 IATI 기준 보고 사업	

개발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 IATI와 원조투명성지수를 중심으로

대분류	대분류 (영문)	대분류 (국문)	소분류 (영문)	소분류 (국문)	항목설명	KOICA1차 보고대상
사업차원 (Activity Standard)	Legacy Data	운영계 데이터(레거시 데이터)			IATI 기준에 속해있지는 않으나 유사한 정보를 담고있는 데이터 보유 여부	
	Conditions	조건	Condition	첨부된 조건 한 가지에 대한 세부 설명	해당 원조활동에 관련된 조건	
			Narrative	서술 항목		
	Result	결과	Title	사업주제	측정가능한 원조활동의 결과	
			Narrative	서술 항목		
			Description	설명		
			Narrative	서술 항목		
			Indicator	지수		
			Narrative	서술 항목		
			Title	지수이름		
			Narrative	서술 항목		
			Description	지수설명		
			Narrative	서술 항목		
			Baseline	기준치		
			Comment	코멘트		
			Narrative	서술 항목		
			Period	기간		
			Period Start	착수시점		
			Period End	종료시점		
			Target	목표치		
			Comment	코멘트		
			Narrative	서술 항목		
			Actual	실제달성치		
			Comment	코멘트		
			Narrative	서술 항목		

개발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 IATI와 원조투명성지수를 중심으로

대분류	대분류 (영문)	대분류 (국문)	소분류 (영문)	소분류 (국문)	항목설명	KOICA1차 보고대상
사업차원 (Activity Standard)	CRS-ADD	CRS-ADD	Aid Type Flag	원조형태기준: "독립적 기술협력",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 "투자프로젝트", "공모형 기금제공"의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CRS++ 보고에 관한 추가적 항목들	
			Loan terms	차관조건		
			Repayment Type	상환금 종류		
			Repayment Plan	상환금 계획		
			Commitment Date	기여책무 일시		
			Repayment First Date	상환금 집행 착수일		
			Repayment Final Date	상환금 집행 종료일		
			Loan Status	차관현황		
			Interest Received	수금된 이자		
			Principal Outstanding	원금 미지불금		
			Principal Arrears	원금 연체금		
			Interest Arrears	이자 연체금		
	FSS	FSS	Forecast	예측	OECD DAC의 Forward Spending Survey에 의거한 사업차원의 데이터보고 가능	
	39개		136개			17개

Annex 2.

ATI 지표별 세부설명 및 가중치

가중치 수준	하위 그룹	지수 정의 및 설명	가중치
원조투명성에 대한 책무(10%)	책무	1. 정보의 자유(FOI) 관련 법안의 질: '세계 RTI 순위'에서 언급하는 정의는 그것이 법안이어야 하며, 정보접근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동 권리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동 권리에는 고소, 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법령 또한 포함된다. 나아가,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는 행정부의 집행 기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채택되거나 승인 혹은 초안이 작성 중인 FOIA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자공여기관과 국제금융기관(IFIs)과 민간재단의 경우, 정보공개 및 투명성정책의 보유여부가 FOIA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Publish What You Fund는 세계 RTI 순위에서 사용된 중요한 접근법을 토대로 이러한 정보공개정책의 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삼점 척도로 측정되고 있다.	3.33%
		2. 실행일정(Implementation Schedule): 부산파트너십 합의문에서는 2012년 12월까지 공통기준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실행 일정을 세부도록 요구하고 있다. Publish What You Fund에서는 개발제공자들이 완료한 일정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OECD의 공통기준 관련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였다. 일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들이 공통기준에 담겨있는 IATI 요소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의욕을 보이고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PublishWhatYouFund(PWYF)의 원조투명성 추적장치 웹사이트에 가면 전체 평가를 볼 수 있다. IATI 실행 스케줄 역시 받아들여진다. 동 지수의 점수는 PWYF의 부산공통기준/IATI 실행 일정 분석에 따라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3.33%
		3. 접근성: 각 기관의 포털,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또는 검색가능 데이터 출처의 보유 등 전반적인 원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한다. 접근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점수 책정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해당 기관의 포털에서 무료로 다량의 데이터를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세부데이터의 보유 여부, 셋째, 오픈라이선스를 통한 데이터 공개 여부가 그것이다. 데이터 출처는 각 기관의 원조포털, 대중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혹은 웹사이트를 말한다. 포털 또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개별적인 국가/섹터 혹은 선별그룹에 대한 원조활동이 아니라, 그 기관이 현재 특정 국가나 섹터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원조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소 5가지의 활동 차원의 지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금융재정 정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은 동일한 정보원천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원조포털에서 데이터가 오픈라이선스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고 명기한 경우, 이 경우는 해당 기관의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혹은 웹사이트 정보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만일 해당기관의 웹사이트가 정보출처라면 "무료의 다량 정보송출" 부분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 만일 어떤 포털이 API를 통해서도 정보를 다량 송출할 수 있으나 웹-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불가능할 경우, 이는 무료의 다량 정보송출로 인정할 수 있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삼점척도에 의해 위에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된다. 각 기준은 동 지수의 전체 점수에서 각각 33.33%를 차지한다.	3.33%
기관차원에서의 정보 공개(25%)	기획	4. 전략: 기관차원에서의 중요한 전략문서는 그 기관의 국제개발에 대해 일반적인 접근방식과 정책을 보여준다. 이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드러내고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기관의 업무 우선순위가 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중요전략을 드러내는 관련 문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문건 역시 미래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접근성을 토대로 책정된다.	2.50%

가중치 수준	하위 그룹	지수 정의 및 설명	가중치
기관차원에서 정보 공개(25%)	기획	5.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는 보통 해당 기관이 전년도에 얼마만큼을 섹터별, 국가별로 원조로 제공했는지에 대한 기본정보(보통 통합적) 및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연차보고서가 정규 업무주기 내에서 최신일 경우, 가령, 기관들은 연차보고서를 한 해 뒤에 편찬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주기 내에서 가장 최신 문건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동 지수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연차보고서는 현재 원조 사업을 통해 어디에다 기관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본 정보들은 미래계획(가령, 현재진행중인 사업의 계획 기간 등)을 드러내고 있어야 한다. 동 지수의 점수는 접근성을 토대로 책정된다.	2.50%
		6. 배분정책: 원조배분정책은 해당 기관이 어디에 어떻게 자원을 사용하는지(예) 국가 혹은 주 제/섹터의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정보를 담고 있는 정책 문서이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문건들이나 원조가 제공되는 국가, 테마, 대상기관 등의 웹페이지의 경우에도 미래계획을 담고 있으며 전부가 다 과거정보이지 않은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제금융기관과 민간재단과 같이 "원조배분" 정책이 없는 기관들의 경우, "투자전략/정책", "교부금지금 정책" 등 동등한 효력이 있는 문건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동 지수의 점수는 접근성을 토대로 책정된다.	2.50%
		7. 조달정책: 한 기관의 조달절차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입찰과 계약 등의 단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하나의 조달 정책 문건으로 만들어지거나 입찰 건에 첨부되어야 한다. 주요 중심의 국제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들과 투자정책이 동등한 효력을 발휘한다. 민간재단의 경우에는 보조비 지급 정책과 동일하다. 원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조달행위를 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달절차가 수여자들에나 별도 사업수행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문건이 필요하며, 본부 차원에서 재화와 서비스 조달 전반에 관한 정책 역시 필요하다. 동 지수의 점수는 접근성을 토대로 책정된다.	2.50%
		8. 국별 정책: 국별전략보고서는 해당 기관의 수원국에 대한 접근법과 원조활동을 수립한 것을 보여준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단순한 문단이 아닌 세부 사항이 담긴 문건이어야 한다. 국제금융기관, 자선기관 및 버티컬(수직) 펀드 등과 같이 국별 전략이 없는 기관의 경우, 테마 혹은 섹터별 전략 문건과 같은 기관과 활동 차원의 중간 수준에 있는 문건들을 수용할 수 있다. 만일 어떤 기관이 모기관 혹은 관련 기관의 전략을 따르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웹사이트에 해당 전략을 링크를 걸어 게재해야 한다. 비슷하게, 만일 어떤 기관이 국가 차원에서 수립 혹은 개발한 전략을 따르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 역시 웹사이트에 해당 전략을 함께 링크를 걸어 게재해야 한다. 동 지수의 점수는 접근성을 토대로 책정된다.	2.50%
	금융	9. 전체 기관 예산: 전체 기관 예산은 향후 3년 간 정부로부터 해당 기관이 책정받는 전체 예산금액 혹은 자금제공자로부터 자원받는 금액을 연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관으로 가는 금액을 의미하며 예시적이다. 연 단위로 산정된 점수는 동 지수에 대한 전체 금액의 1/3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3년 사이에 통합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1년의 예산금액과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다. 국제금융기관 및 개발금융기관들은 전통적인 원조기관들과는 다르게 예산을 분배받지 못한다. 많은 경우에, 전체 투자금액 수치가 고려된 총예산은 매년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가끔씩 전체 지출금액의 전망치를 공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망치는 지수 산정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비슷하게, 민간재단과 인도주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들의 예시적인 수치들 역시 고려대상이 된다. 동 지수의 점수 책정은 데이터의 서식과 데이터 제공 연수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4.17%

가중치 수준	하위 그룹	지수 정의 및 설명	가중치
기관차원에서의 정보 공개(25%)	금융	10. 분산 예산: 해당 기관의 원조지원 관련 연도별 기획예산 예측금액은 향후 3년간 그 기관 혹은 조직이 매년 다른 국가, 프로그램, 수원기관 등에 제공하는 분산치이다. 동 수치는 예시적인 수치이다. 점수 산정은 예산정보를 공개하는 기관들이 몇 년(최대 3년까지)을 공개하고 있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 전체 100점 만점 중 한 연도 앞서 보고 시 33.33점을 획득하게 된다. 2~3년 사이에 통합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1년의 예산금액과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다. 국별 예산과 주제별 예산 둘 다 나라별로 원조활동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 공여기관들에 대해 점수산정에 고려할 수 있다. 주제별 혹은 섹터별 우선순위에 따라 분리된 예측수치를 역시 점수산정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제금융기관 및 개발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정보가 담긴 로드맵을 때때로 공개하기도 한다. 미래예산의 시작 및 종료시일은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정보에 나타나는 기관의 재무연도를 토대로 계산한다. 예산은 '향후 3년'이라는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6년 12월까지의 종료시점에 도달해야 한다. 만일 어떤 기관이 고정예산주기의 종료시점에 도달해 있고, 그로 인해 향후 3년간의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동 지수에 대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 OECD DAC에 보고되는 향후 지원 계획 (Forward Spending Survey)의 데이터는 평가대상인 특정 기관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고려된다. 동 지수의 점수 책정은 데이터의 서식과 데이터 제공 연수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4.17%
		11. 감사: 기관의 원조활동에 대한 연간 감사는 독립적 기관에 의해, 해당기관의 회계와 활동에 대해 수행되는 공적 감사활동을 의미한다. 정규 감사주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최근까지의 감사활동에 대한 정보, 가령 2년마다 행해지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 감사주기 기간 내의 가장 최근 문건이 점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동 지수에 있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연간 회계감사의 형식적 승인이 요구된다. 감사원 및 감사원장보고 등 정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감사활동들은 점수 산정에 고려대상이 된다. 동 지수의 점수 책정은 접근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4.17%
활동차원에서의 정보 공개(65%)	기본 활동 정보	12. 사업수행자: 특정 원조활동의 사업수행자는 이러한 활동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 기관이 수행자가 된다. 이러한 정보는 '배제명령' 조항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적 원조기관의 경우 보안 사유 때문에 사업수행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배제조항은 고려대상이 되나, 명시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이 경우를 단순한 누락의 경우와 구분하기 위함). 동 지수의 점수 책정은 서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1.63%
		13. 고유 ID: 사업활동 식별자는 프로젝트 번호와 같은 해당 활동의 고유 참고 ID이다. 이러한 ID는 해당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검색을 가능케 하고 프로젝트를 데이터베이스나 기록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게끔 한다. 프로젝트 ID는 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재되어야 한다. 단순히 URL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ID는 숫자로 되어 있거나 글자와 숫자를 혼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동 지수의 점수 책정은 서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1.63%
		14. 명칭: 특정 사업활동의 명칭은 곧 해당 활동의 이름이다. 이는 가급적이면 형식적인 명칭이어야 하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사업활동의 명칭은 완전해야 하며, 약어나 두문자어 등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책정은 서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1.63%
		15. 설명: 사업활동에 대한 설명은 묘사적인 서식이며, 주제보다는 길고, 해당활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때때로 짧은 문장이 될 수 있으나, 더 구체적일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점수 산정에 반영 가능하다. 사업활동에 대한 설명은 주제가 아닌 설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10개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 책정은 서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1.63%

가중치 수준	하위 그룹	지수 정의 및 설명	가중치
활동차원에서의 정보 공개(65%)	기본 활동 정보	16. 계획된 일정: 계획일정은 한 사업이 시작되고 종료될 것으로 계획되는 시일을 일컫는다. 만일 한 사업에 대한 계획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명시적으로 계획되거나 실질적인 일정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러한 일정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예를 들어, 데이터수집 사업에서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과 관계 된다면 계획일정인 것으로 간주한다. 수원국이 역년보다는 회계연도에 맞춰 사업활동을 그려나가고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여, 동 부분에는 월과 연도 모두 포함한다. 만일 사업활동이 시작됐거나 종료됐을 경우, 원래 계획대로의 시작과 종료시점이 실제 수행된 일정에 더불어 유지되어 점수 산정을 받도록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 책정은 서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1.63%
		17. 실제 일정: 이는 한 사업이 실제로 시작한 시일(그리고 사업이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한 시일도 포함)을 일컫는다. 만일 한 사업에 대한 계획일정 중 명시적으로 계획되거나 실질적인 일정이 아니어도 실제 일정으로 간주한다. 실제일정은 어떤 구체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 예를 들어,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수행 합의 서명, 임원진 발표 혹은 평가 일정 등 또한 점수로 인정된다. 수원국이 역년보다는 회계연도에 맞춰 사업활동을 그려나가고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여, 동 부분에는 월과 연도 모두 포함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 책정은 서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1.63%
		18. 현황: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기획 단계, 수행, 종료 혹은 취소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 가능케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 책정은 서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1.63%
		19. 연락 세부사항: 이 부분은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연락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개인이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연락정보가 아니라 대표번호 혹은 안내데스크 번호가 제시되어도 무방하다. 자금제공 기관이나 사업수행 기관의 연락처를 제시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락정보는 사업활동과 함께 명기되거나 혹은 "Contact Us"와 같은 링크가 사업활동과 함께 명기되어야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 책정은 서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1.63%
	분류	20. 협력형태 분류: 이러한 협력분류는 어떻게 사업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파악 가능케 한다. 자금지원에는 한 정부로부터 다른 정부에게 (양자간) 전달, WB나 UN과 같은 다자국제기구를 통한 전달(다자간), 기타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점수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활동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기관 전체적으로 한 가지 협력형태만 수행하는 경우, 국가전략문서 혹은 웹사이트에, 예를 들면, "모든 원조는 양자 간 협력형태로 제공된다" 또는 "우리는 독점적으로 민간부문/비영리부문과 협력하고 있다." 혹은 "모든 활동은 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제공받는다."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본 지수에 대한 점수 책정은 서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1.86%
		21. 자금흐름 형태: 본 부문은 특정 기관이 어떻게 특정 사업활동을 ODA, OOF, 기후기금 혹은 기타 형태로 분류하는 지를 보여준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각 개별활동당 이러한 명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혹은 모든 원조 자금흐름 형태가 하나로만 수행될 경우, "모든 원조는 ODA이다" 혹은 "우리는 민간보조금만을 지급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국가전략문서나 기관의 웹사이트 등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서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1.86%
		22. 원조의 종류: 원조의 종류는 해당 사업이 예산지원에 해당하는지, 혹은 기술지원, 채무탕감, 행정비 지원, 기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 건별 당 기술되어 있거나 혹은 기관 전체적 차원에서 한 가지 원조형태만 이루어질 경우 "모든 원조는 프로젝트 형태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등의 내용이 국가전략문서 혹은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자문서비스 사업분야/개입유형은 (투자환경, 민간파트너십 등) 넓게 보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분야와 개입유형에 대한 명시적 진술이 기관의 웹사이트에 올라있을 경우, 웹서식 형태로 원조 종류를 기재한 것으로 본다. 동 지수의 점수는 서식을 근거로 책정된다.	1.86%

가중치 수준	하위 그룹	지수 정의 및 설명	가중치
활동차원에서의 정보 공개(65%)	분류	23. 자금 유형: 자금 유형은 해당 사업활동이 증여, 차관, 수출신용 혹은 채무탕감 중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 건별 당 기술되어 있거나 혹은 기관전체적 차원에서 한 가지 원조형태만 이루어질 경우, "모든 원조는 무상원조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국 가전략문서 혹은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야 한다. 투자형태 (차관, 자기자본 등)에 대 한 정보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투자형태에 대한 명시적 진술이 기관 웹사이트에 올라있을 경우, 웹사이트 형태로 자금 유형을 게재한 것으로 본다. 동 지수의 점수는 서식을 근거로 책정된다. 동 지수의 점수는 서식을 근거로 책정된다.	1.86%
		24. 부문(섹터): 해당 사업활동의 섹터란, 그 사업이 가령 보건 혹은 교육 프로젝트 등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관련 정보가 부수적으로 사업주제나 설명에 들어있는 경우는 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정보는 별도로 명시되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프로젝 트의 정보가 섹터별로 분류되어 게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목록에 적힌 섹터에서만 활 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 지수는 서식을 근거로 점수를 책정한다.	1.86%
		25. 국가 내 위치: 국가 내 지리적 위치란 국가 안에서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도나 시, 혹은 지역코드가 부여된 지역을 일컫는다 (정확한 위도 와 고도가 공개된 경우). 해당 정보는 별도로 명시되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업 이 국별 혹은 지역별 수준에서 진행되는 경우, 해당사업의 자금이 송금되는 지역의 정보를 게 재하는 경우에도 동 지수에 점수로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수도나, 사업수행기 관의 위치 정보가 그것이다. 이에는 민간부문투자, 대출금 혹은 채무탕감지불금 등 이와 같은 활동에 관련된 은행 혹은 기관의 위치 정보 등이 해당된다. 본 지수는 서식을 근거로 점수를 책 정한다.	1.86%
	관련 문건	26. 구속성 원조 현황: 구속성 원조 현황은 해당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활동을 얼마나 "구 속성"(조달이 해당기관이 속한 국가의 재화 및 서비스로 제한된다) 혹은 "비구속성"(개방된 조달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느냐를 보여준다. 활동문건에 제시된 조달정책 혹은 입찰 관련 문건 등 구체적인 입지조건은 구속성원조현황 정보에 해당한다. 국가투자기관에 대하여 대출을 제공하 는 기관들의 경우, 그들이 제공하는 원조가 구속성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국 제금융기관 및 개발금융기관의 경우, 그들의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투자코드 역 시 받아들여진다. 민간재단의 경우, 증여(장려금) 지급정책 역시 받아들여진다. 만일 이러한 자 료들이 없는 경우, 원산지 규정을 토대로 한 계약에 자격조건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조달정책 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동 지수의 점수는 서식을 근거로 점수를 책정한다.	1.86%
		27. 양해각서(MoU): 양해각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기관과 수원국 정부간에 원조제공 에 대한 합의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일부 기관들은 MoU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원국 정부, 사업수행 파트너나 수혜자들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개발된 투자코드 또는 파트너십/국가 간 합의 내용도 점수 산정의 고려 대상이 된다. 동 지수의 점수는 접근성 을 토대로 산정된다.	2.17%

가중치 수준	하위 그룹	지수 정의 및 설명	가중치
활동차원에서의 정보 공개(65%)	관련 문건	28. 평가: 평가문건들은 사업활동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의도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목표의 달성 혹은 미달성에 어떤 주요 요소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고 사업의 영향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정보는 해당기관의 웹사이트에 구체적인 평가 섹션에 게재되어 있으면 된다. 만약 평가 중에 있는 어떤 사업이 아직 수행 완료되지 않았으나 다른 수행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문건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관은 본 지수에 대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모든 기관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 국별평가를 매 3년마다 공개하는 등의 정기적인 평가 주기 내에서 사업평가를 공개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기 내에서 가장 최근 문건이 받아들여진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접근성을 토대로 산정된다.	2.17%
		29. 목표: 어떤 사업의 목표 혹은 목적은 그 사업이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의 목표에는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목표 섹터 혹은 대상그룹, 그리고 예상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접근성을 토대로 산정된다.	2.17%
		30. 예산 문건: 이 문건은 개별 사업의 각기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계획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 문건은 때로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되기도 한다. 예산문건은 단순히 국가적 차원의 예산 내용만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 만일 어떤 활동예산이 더 큰 국가차원의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 분야별로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있을 때만 점수 산입이 인정된다. 예산문건의 작성이 상업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업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수정한 문건이 점수 산입에 인정될 수 있으나, 왜 해당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지 그리고 공개되면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동 지수의 점수는 접근성을 토대로 산정된다.	2.17%
		31. 계약: 건별 계약이란 사업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기관 혹은 개인과의 협력체결을 의미한다. 동 정보는 기관 웹사이트의 조달 부분에 명기될 수도 있고, 별도의 웹사이트 혹은 중앙정부 조달관련 웹사이트에 명기될 수 있다. 계약관련 문건들은 단순히 국가 차원에서 쓰여질 수 없다. 만일 어떤 사업의 계약이 좀 더 포괄적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건에 포함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언급해야만 점수 산입에 인정될 수 있다. 낙찰자, 금액,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개요, 시작 및 종료 시일, 원본입찰문건에 포함된 고유참고자료의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의 계약 건에 대한 기본 정보 역시 점수 산입에 인정될 수 있다. 동 지수는 전체 ATI의 대상기관에 적용된다. 하지만 계약관련 정보 공개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부분에 나오는 정보들의 수정 공개를 인정하나, 수정 사유는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수작업으로 계약관련 정보를 일일이 체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그에 연계된 계약을 찾는 것보다는 기관의 조달정책에 맞추어 그 기관의 전체계약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버티컬펀드의 경우, 승인 완료된 국별 제안사항이나 기금제공자와 수혜자 간 합의문 등 동등한 효력을 가진 문건은 점수 산입에 인정된다. 동 지수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토대로 점수가 책정된다.	2.17%

가중치 수준	하위 그룹	지수 정의 및 설명	가중치
활동차원에서의 정보 공개(65%)	관련 문건	32. 입찰: 입찰이란 사업수행을 위한 상품과 재화 공급을 위해 기업이나 기관들로 하여금 경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송부하는 개별계약 혹은 제안을 지칭한다. 동 정보는 별도의 웹사이트, 가령 중앙정부 조달 웹사이트 등에 게재된다. 국제금융기관이나 개발금융기관의 경우 투자코드나 정책이 점수 산입에 인정된다. 민간재단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제안에 의한 기관들의 제안서 제출이 점수 산입에 인정된다. 인도주의 기관의 경우, 기금확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문건들의 존재 여부에 의해 점수로 인정된다. 입찰 역시 수작업으로 관련 정보를 일일이 검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찰자를 찾는 것보다는 그 기관이 일관성 있게 조달정책에 맞추어 기관 전체의 입찰공모를 검토하는 것이 완료되어야 한다. 원조활동과 관련하여 입찰을 붙이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가령, 조달활동이 필수여지나 기타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지수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토대로 점수가 책정된다.	2.17%
	자금정보	33. 예산: 사업활동 예산이란 사업활동에 대한 전체 자금약정의 내역을 연도 혹은 분기별 단위로 묶어 나타낸 금액을 말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 획득을 위해서는, 최소 차년도 예산(예를 들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혹은 사업활동 종료시점 중에서 제일 이른 시점까지의 예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정보 공개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전체 기금/중여/차관 예상금액에 대한 정보가 점수 산입에 인정되며 또는 문건 내에 예산관련 정보에 대해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며 왜 관련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서식을 근거로 책정된다.	3.25%
		34. 약정액: 이 부분은 사업의 실행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재무적 약정액을 의미한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 활동예산의 세부내역이라기 보다는 고수준의 약정이라고 보면 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서식을 근거로 책정된다.	3.25%
		35. 집행 및 지출액: 실제 개별 재무적 집행액은 개별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거래 건별 당단위로 보아야 한다. 각 활동에는 여러 건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어떤 기관에게는 상업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으나 PWYF의 입장은 실제 지출금 정보는 한 번 돈이 지급되고 난 것이기 때문에 덜 민감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관들이 동 지수에 대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국제금융기관과 개발금융기관의 경우, 전체 기금/차관의 지출금액에 대한 정보가 받아들여지며, 차관 상환금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있다.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반드시 상세히 명기되어야 하며 왜 관련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서식을 근거로 책정된다.	3.25%
		36. 예산 ID: 예산의 분류는 사업활동을 수원국 정부 고유의 예산코드와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 지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적 분류방법은 예산코드 자체를 제공하거나 혹은 공여기관의 세부목적으로부터 수원국의 기능적 또는 행정적 예산분류를 유추하여 공통 코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경제적 분류는 자본금 대 현행 지출금의 예산 비율을 제공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동 지수는 ATI 지수에서 평가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적용된다. 예산 식별기제는 수원국 정부의 고유 예산의 맥락에 맞게 원조흐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동 정보는 정부에 직접 지급되는 예산(예산상)이라는 표현 사용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고유 예산과 연관 있는 다른 자금흐름에도 적용된다. 어떤 기관이 민간부문 투자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산분류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들은, 예를 들면, 소액금융과 금융서비스 기능 하에 현재 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서식을 근거로 책정한다.	3.25%

가중치 수준	하위 그룹	지수 정의 및 설명	가중치
활동차원에서의 정보 공개(65%)	성과	37. 결과: 결과는 어떤 사업이 기술된 목표나 계획에 맞추어 의도된 성과를 달성 했는지를 드러낸다. 이 정보는 때때로 논리모형모델이나 성과 연결고리 등을 지칭하기도 하며 기관의 웹사이트에 구체적인 결과로서 혹은 평가 부문에 기술된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모두 동 지수의 점수 책정에 고려 대상이 된다. 만일 현재진행형인 사업이라면 예상결과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업이 종료 되었다면 종료시점으로부터 12개월 내에 실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 책정은 서식을 근거로 한다.	4.33%
		38. 영향평가: 프로젝트 착수 이전의 영향평가는 개발개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긍정/부정적, 일차적/이차적 영향 등의 총가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그 프로젝트가 어떤 목표를 제공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영향평가는 모두 점수 산입에 고려된다. 국제금융기관 및 개발금융기관은 관련 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영향평가를 공개하고 있으나 그들 기관 역시 사업활동의 종국적인 영향력과 결과에 연관성이 있는 만큼, 모든 기관들은 동 지수에 대해서 점수를 획득한다. 차관과 민간부문 투자에 대해서는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성 평가와 재정목표가 점수 산입에 고려대상이 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차관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인도주의적 실행계획(Humanitarian Implementation Plans' HIPs)과 프로젝트 계획은 인도주의 기관들에 대해서 점수로 인정된다. 동 지수에 대한 점수는 접근성을 근거로 책정된다.	4.33%
		39. 조건: 사업활동의 조건에는 기준점이나 선행사례, 그리고 "~의 대상이다"라는 표현을 포함한 문구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특정 사업활동에 해당되며 수원자가 기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만일 어떤 사업활동이 차관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동 조건에는 차관 상환금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제금융기관 및 개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동 조건에 상환금 조건 혹은 특별 조건이 포함된다. 관련 문건의 작성 이 상업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의 수정이 인정된다. 해당 수정사항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왜 그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지, 그리고 공개 되었을 때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해를 당할 가능성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민간단체와 인도주의적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증거가 무엇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한 것이 있다면 점수 산입에 반영된다. 조건에 대한 템플릿은 동 지수의 점수를 획득하는 데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관련 정책이 없다면, 특정 사업과 연계된 성과나 재무 조건은 무조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동 지수의 점수는 접근성을 토대로 책정된다.	4.33%

참고문헌

조이슬, 'IATI 가입하면 원조투명성이 높아질까?', 시사인(IN) 94호, ODA Watch, 2014.10.15, <http://www.odawatch.net/464902>.

IATI (2009) The Costs and Benefits of Aid Transparency available at <http://www.aidtransparency.net/wp-content/uploads/2010/06/1140-100407-Framework-for-Costs-and-Benefits-of-transparency-with-Annexes.pdf>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IATI) 홈페이지, <http://www.aidtransparency.net/>

KOICA (2013) 20132013년 원조투명성지수 평가 대응계획. KOICA 내부자료.

KOICA (2014a) 원조투명성의 국제적 흐름과 KOICA의 현황. KOICA 내부자료.

KOICA (2014b) KOICA의 원조정보공개 및 IATI가입 로드맵. KOICA 내부자료.

ODI (2007), Interim Report of the Uganda Donor Division of Labour Exercise;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PublishWhatYouFund(PWYF) 홈페이지, <http://ati.publishwhatyoufund.org/>

연구자료

ODA연구 2014-33-224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